

특허협력조약

발신: 국제조사기관

PCT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PCT규칙 43의2.1)

수신:
김정훈
대한민국 06099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5길 14 삼성빌딩 2층 피엔티특허법률사무소

발송일 (일/월/년) 2020년 01월 06일 (06.01.2020)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190250

추가적인 조치
아래 2를 참조

국제출원번호
PCT/KR2019/012737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9년 09월 30일 (30.09.2019)

우선일 (일/월/년)
2018년 11월 30일 (30.11.2018)

국제특허분류(IPC)
G06F 17/27(2006.01)i, G06F 17/24(2006.01)i

출원인
한국과학기술원

1. 본 견해서는 다음 기재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1기재란 견해서의 기초
- 제2기재란 우선권
- 제3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
- 제5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 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
- 제7기재란 국제출원의 흠결
-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2. 추가적인 조치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면, 본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견해서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만, 출원인이 본 기관 이외의 기관을 IPEA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IPEA가 PCT규칙 66.1의2(b)에 따라 본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위와 같이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 견해서가 상기와 같이 IPEA의 견해서로 간주되는 경우, 출원인은 서식 PCT/ISA/220의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의견서 및 보정서(해당하는 경우)를 IPE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에 대하여는 서식 PCT/ISA/220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42-481-8578

본 견해서의 완료일
2019년 12월 30일 (30.12.2019)

심사관
권성호
전화번호 +82-42-481-3547



제1기재란 본 견해서의 기초

1. 언어와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출원시의 언어로 된 국제출원
 - 국제조사를 위하여 _____ 로 번역되어 제출된 국제출원의 번역문 (PCT규칙 12.3(a) 및 23.1(b))
2. 본 견해서는 PCT규칙 91에 따라 당해 기관이 허가하였거나 당해 기관에 통보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PCT규칙 43의2.1(b)).
3. 국제출원에 게시된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a. 아래의 형태로 출원시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
 -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 b. PCT 규칙 13의3.1(a)에 따라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 c.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국제출원일 이후에 아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규칙 13의3.1(a))
 -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규칙 13의3.1(b) 및 시행세칙 713)
4. 추가로 서열목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버전이나 사본이 제출된 경우, 후속 버전 또는 추가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출원시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또는 출원시의 게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추가 의견:

제5기제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1. 견해

| | | | |
|----------------|-----|-----------|----|
| 신규성 (N) | 청구항 | 1-10 | 있음 |
| | 청구항 | 없음 | 없음 |
| 진보성 (IS) | 청구항 | 2-5, 7-10 | 있음 |
| | 청구항 | 1, 6 | 없음 |
| 산업상 이용가능성 (IA) | 청구항 | 1-10 | 있음 |
| | 청구항 | 없음 | 없음 |

2. 인용문헌 및 설명:

참고한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D1: KR 10-1752679 B1 (라이팅박스(주)) 2017.09.26

D2: US 2017-0177563 A1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2017.06.22

D3: KR 10-2009-0017830 A (한국과학기술원) 2009.02.19

D4: KR 10-2008-0021771 A (각코호진 와세다다이가쿠 등) 2008.03.07

I. 신규성 및 진보성(PCT 제33조(2) 및 (3))

1. 청구항 1 및 6

청구항 1과 가장 근접한 인용문헌 D1에는 침삭 대상 영역을 자연어 처리를 이용해 분석하고, 선택한 영역의 문장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문장 중 추천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제공하는 단계(단락 [0046]; 및 청구항 1 참조); 및 추천점수는 침삭대상영역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문장의 유사도, 가중치, 필터링지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단계(단락 [0038]-[0040]; 청구항 1; 및 도면 1 참조)를 포함하는 온라인침삭 방법이 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구항 1의 예측된 신뢰도분포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기반한 복수 증강 방식을 통해 입력된 문서에 대한 신뢰도 증강을 수행한다는 점이 인용문헌 D1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가 있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문헌 D1의 분포들 사이의 최소거리를 갖는 샘플에 대한 유사도를 산출하고, 가중치, 필터링 지수를 계산하여 추천점수를 구하여 이를 기반으로 침삭 문장을 제공하는 점(단락 [0034]-[0035]; 및 청구항 1 참조)과 인용문헌 D2의 텍스트 교정을 위해 문법 오류, 의미 배치 오류 등의 오류 항목을 정의하고, 코퍼스를 이용해 훈련하되, 첫 번째 선택의 분류자의 신뢰도가 전체 단어에 대한 신뢰도 임계치 t 보다 큰지 여부를 확인하여 훈련하는 점(단락 [0131]-[0134] 참조)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설계 변경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기재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5 기재란의 연속

청구항 6은 문서 신뢰도 증강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청구항 1과 기술적 특징이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청구항 1 및 6은 인용문헌 D1 및 D2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없습니다.

2. 청구항 2-5 및 7-10

청구항 2, 4-5, 7, 9-10의 추가적인 특징들은 인용문헌들에 개시되어 있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습니다. 청구항 3, 8은 각각 청구항 2, 7의 종속항입니다. 따라서 청구항 2-5 및 7-10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습니다.

II. 산업상 이용가능성(PCT 제33조(4))

청구항 1-10은 산업상 이용가능합니다.